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사안 접수·심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학생 지원과 센터 운영의 질을 관리·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에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

센터 민간위탁 운영

2.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2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329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3. 필요성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 지원은 상담·치료 등에 있어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함.
- 민간위탁으로 전담지원을 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분리하여 상황에 맞는 안정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봄.
- 민간기관은 전문적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까지 운영된 민간위탁 사례에서 긍정적인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효율적 운영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 민간위탁 기관은 계약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으므로 과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성과 중심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함. 그 외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 및 인력풀 활용이 용이함.

4. 위탁 사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을 위한 주간보호형 위드위센터 운영 및 피해학생 통합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기이해 및 의사소통기술, 사회성함양 프로그램, 자기주도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인관계 개선 및 적응 지원
- 학습 계획 코칭 및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교과교육 지원을 통한 사후 학교 적응력 제고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노작교육, 자격취득과정 등 운영
- 보호자 및 가족 상담 등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5. 위탁 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

6.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7. 예산 규모: 금692,212천원(금346,106천원×2년)

IV. 참고사항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 : 별첨 1

2. 관계 법령 : 별첨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2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329호)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78호로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상담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검토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유, 학습·진로 지원, 가족상담 등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2년 선정된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2022.1.1.~2025.12.31.)이 금년 말 만료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¹⁾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연속으로 할 경우 의회 동의를

1)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의 경우 2019년 사업 시작 시점에는 교육부 훈령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임을 사유로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되었고, 이후 2022년²⁾ 및 2024년³⁾에 각각 교육위원회에 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현재는 최초 사업 추진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고, 이에 2026년부터의 신규 계약을 앞두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2년간(2026.1.1.~2027.12.31.)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기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추진경과

연번	일자	내용	비 고
1	2012.12.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	2019.1.	교육부 국가시책사업(가정형Wee센터 구축) 특별교부금 교부	
2	2019.9.	민간위탁기관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푸른나무 재단
3	'20.2.~'21.1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	1년 단위 계약, 운영평가 후 계약 연장
4	2021.11.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5	2021.12.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푸른나무 재단
6	'22.1.~'25.1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	2년 단위 계약, 운영평가 후 2년 계약 연장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2022.2.9.),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3)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2.27.),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일시보호, 심리상담, 정서치유, 학습 및 진로지도, 맞춤형 서비스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무는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학생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사 등 특화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 민간위탁 사무의 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사무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는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적 외상 뿐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발성 개입이 아닌 치유·회복 중심의 접근과 학교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한 총체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 이러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 공간,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상담 인력과 치유 중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갖추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기관의 참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피해학생들이 학교와 분리된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집중적인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무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 행정적 한계와 운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지원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사무는 최초 위탁 이후 동일 기관이 계속 수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관행적 위탁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향후 신규 기관 선정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각호의 선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위탁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자	비고
최초위탁	1년('20.2.5.~'20.12.31.)	(재)푸른나무청예단	공모
위탁	1년('21.1.1.~'21.12.31.)	푸른나무재단	재계약
위탁	2년('22.1.1.~'23.12.31.)	푸른나무재단	공모
위탁	2년('24.1.1.~'25.12.31.)	푸른나무재단	재계약

□ 이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 위드위(With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	----------------	-------	----------------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22.] [법률 제206700호, 2025.1.21.,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2.]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일부개정]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